2023년 국립목포병원 의료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목포병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우수인재 공직유치를 위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30일

국립목포병원장

1 채용직급 및 선발 예정 인원

분 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채용 예정부서	자격요건
의료기술	의료기술서기 (8급)	1명	방사선 촬영 등	국립목포병원 일반결핵과	- 방사선사면허 취득 후 해당(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근거 법령

- 가. 「국가공무원법」제27조(결원 보충 방법)
- 나.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자격증소지자)
- 다.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채용)
- 라.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및 제29조
- 마.「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임용시험)
- 바.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제20조(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
- 사.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3 주요 업무 분야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내용
의료기술	의료기술서기 (8급)	1명	- 방사선 촬영 등 영상의학실 업무 전반 - 일반결핵과 업무 지원

4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국가공무원법」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응시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자격요건
		O 방사선사면허 취득한 후 해당(관련)분야* 연구 (1) 또는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자격 ** '해당(관련)분야'라 함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 제2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 요건 ** '연구 또는 근무궁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의료기술서기 (8급)	○ 응시자격요건(①자격요건)을 초과한 해당분야 경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방사선사) 연구 또는 근무경력으로 응시자격요건 2년을 초과하는 경력에 대해 차등 배점 *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내용,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5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한하여 차등 배점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CT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등급무관, 소지여부에 따른 우대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봉사활동 실적 시간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인증관리 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시간별 차등하여 배점(최대 20시간)

- ※ 서류전형 심사 시 응시 자격요건에 관련 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응시 자격요건의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은 아래의 기준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
 - ①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②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단, 봉사활동실적은 공고일 기준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처리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CT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봉사활동 실적

나. 2차 시험(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 응답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 분 시험일정		내용		
채용시험공고	2023. 3. 30(목)~ 2023. 4. 10.(월)	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접수	2023. 4. 6.(목)~ 2023. 4. 10.(월)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의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4. 21.(금)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에 게재		
면접시험	2023. 4. 28.(금)	국립목포병원 2층 소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3. 5. 10.(수)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 게재, 개별 통보		

[※]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양식)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 국립목포병원 홈페이지(http://www.tbmokpo.go.kr)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나. 접수일시: 2023. 4. 6.(목) ~ 4. 10.(월), 09:00~18:00
- 다. 접 수 처: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채용담당자 앞(의료기술직 응시원서 재중) (우) 58605 전남 목포시 신지마을 1길 75 국립목포병원 서무과 총무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 09:00 ~ 18:00까지 접수
 -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응시자 핸드폰 SMS로 통보 예정
- **마. 기타문의:** 국립목포병원 서무과(총무팀) 인사담당(☎061-280-1171, 1102)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반환 시 사본은 국립목포병원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3. 5. 10. ~ 6. 12.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 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9 보수수준 및 근무기간

가.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책정

나.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10 기타사항

-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 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총무팀(인사담당) 061-280-1171, 1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출서류

- 응시원서(정부수입인지* 부착)[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 정부수입인지(우체국)나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응시원서 제출 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증명서 제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2호, 제3호] 각 1부(A4용지 2매 이내) ※ 자기소개서 내용에는 직무수행 경험, 직무관련 전문성 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괴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별지서식 제5호] 1부
 - ※ 이력서상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발행기관의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해 인정(단,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문서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 <u>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확인할</u>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 제출해야하고,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 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 증명이 안될 경우 경력 불인정
 - ※ 근무기간과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성명, 서명(날인), 연락처 기재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관련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은 제외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1부
-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O CT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우대요건) 사본 각 1부
-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 ※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인증관리사이트'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채용시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본) 1부
 - ※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력증명서 제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사본 1부 ※ 시험위원 위촉을 위한 제척사유 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 O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 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목포병원 총무팀(인사담당) 061-280-1171, 1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누구든지</u>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u>부정행위를</u> <u>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u>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Rightarrow 참여민원 \Rightarrow 신고센터 \Rightarrow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 직급	근무예정부서(지역)	선발예정인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목포병원 의료기술서기		1명	

주요업무	○ 영상의학실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입원, 외래환자촬영(일반 및 이동식 X-선 촬영, CT촬영 등) - 방사선 피폭선량 관리 업무 - 의료영상장비 관리 및 점검 업무 - 방사선발생장치 안정관리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업무 - 의료영상 입력 및 출력 업무 - 영상의학실 통계관리 업무 - 영상의학실 물품관리 및 점검 업무
	○ 일반결핵과 업무 지원 ○ 기타 병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 기타 명원상이 시성아는 입부 등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필요역량	○ (직렬별 역량) 결핵관련 전문성,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필요지식

자격		관련분야 : 방사선 동의 취급·검사 업무 등
요건	자격	○ 방사선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요건	○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해당분야¹) 근무·연구경력²) 1) 해당분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사 업무 2)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 관련 부서, 「의료 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CT전문방사선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구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 등급무관, 소지여부에 따른 우대 ※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시간) ※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사회복지인증관리사이트(www.vms.or.kr)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며, '공고일'기준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시간별 차등 배점(최대 20시간)

경력채용시험 응시서류 제출 목록

※ 응시번호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응시직급
		국립목포병원	의료기술	의료기술서기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출서류명		유무
건호	게물시규정	제출	미제출
1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0	
2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3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4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별지서식 제5호]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6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7	[별지서식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방사선사 면허증(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10	CT전문방사선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우대요건) 사본 1부		
11	봉사활동 실적증명서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인증관리사이트"의 최근3년이내 실적		
12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로 발급)		
1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u>순서대로 편철 후 제출유무 표기(</u>○)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앞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u>2023년 국립목포병원 의료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u>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의료기술서기	78 78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화(휴대전화)				

응 시 표(_{부본})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의료기술서기	70.0	(한자)
	2023년	월 일	
	국 립 목 포	병 원 장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u> </u>	=(=)	2		

응시원서 작성요령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응시원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필 또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단, 날인 또는 서명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직급**: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의료기술서기 또는 의료기술8급 등)
- ②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전화(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③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우체국의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를 통해 A4 사이즈로 발급하여 제출, 8급 이하는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직급별 해당금액에 미달하거나, 효력 없는 수입증지 등을 부착 시 해당원서는 무효 처리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작성, 작성 칸이 부족할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가. 공통사	항				
웅시번호		응시분야	의료기술	성 명	

나. 응시자격							
	면허증명	면허증 취	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면허증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면허 취득 후 경력)	0000 (00斗)	' 20.01.01. ~ ' 20.00.00.					

다. 우대사항(해당자 작성)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긴	<u>}</u>	· 담당업무			근무형태
방사선사 근무경력	0000 (00과)	' 20.01.01 ' 20.00.0					근무시간기제 (주40시간)
(응시자격요건 2년을 초과한							
(경력)							
전문방사선사	면허증명	면허증 취	면허증 취득(예정)일 면허(면허(자	격)번호	자격검정기관
자격증							
사무관리	자격증명(급수)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분야							
자격증							
	봉사기간	봉사장소	-	. 활			증명서발급
봉사활동 실적	' 20.01.01. ~ ' 20.00.00.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인)
------	-----

- * 작성요령
- 1.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2. "나. 응시자격"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
- 3.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u>자기소개서</u>

성 명	응시직급	의료기술서기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 유의사항은 삭제 후 작성 요망

2023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의료기술서기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3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작성요령]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

경력(재직)증명서

성 명				생년	<u></u> 1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재 직 기		부서 l(급)				주당 근무시간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00년 00월 000일 근무)과				
	00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0일 0000년 00월 00일까지 근무							
중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위 기자	 사항이 사실과 C	· 	명합니	다.				
		2023년	월	일				
	- 기 관 명:						발급자	
- 주 소: - 전화번호:						소속		
- 대 표 자:			(1)			직위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u> </u>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5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1	보스코전자 경력시항	지경유거 회의 등옥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부 제RI	· 제공 동이/
4.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 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i>조</i> 회에 필요한 시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u>기타 개인정보</u>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인사혁신처
-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	비하지	않음
	20	023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목포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내역 확인,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등 기타 제출한 자료(복수국적 등)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서명)

국립목포병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국립목포병원
- 2.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무원 신규채용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서식 제9호]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	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I = I · · · · · · · · · ·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목포병원	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